

미국의 부로일러 계약생산의 여러가지 형태



이 영 철

<춘천농대 교수>

I. 계약생산의 의의(意義)

미국의 농촌을 여행하는 사람이면 의례이 곳곳에 버려진 많은 계사(鷄舍)를 발견하게 된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 고층계사(高層鷄舍)가 지금은 쓰러져 가는 폐옥인채 시대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눈부시게 발전해가는 미국의 양계산업의 한 단면을 입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미국의 양계업자들은 20년전의 양계 경영방식이나 그때의 시설이나 기술로서는 오늘날 혹독한 경쟁을 이겨 나가지 못하고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발전하는 양계업에 보조를 맞추어 항상 새로운 기술에 주목해야 하고 또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들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양계업계에서 근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부로일러를 위시한 전 가축계의 계약경영방식이다.

미국무청의 한 자료는 1968년 현재 미국에서 기르고 있는 전 가축중에서 육계의 98%, 칠면조 60%, 산란계 35%가 이 계약형태하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일명 수직통합(直垂統合 Vertical Interg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계약생산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엔 옛날부터 있어왔던 소, 돼지의 임대사육원리(賃貸飼育原理)와 비슷한 것인데 부로일러 산업의 경우 부로일러를 직접 생산하는 사육자와 자본을 대여하는 계약자(Contractor) 혹은 통합자(統合者)라고 부르는 집단간의 서로가 일정한 계약형태하에서 부로일러 생산을 경영해 나가는 방식이다.

즉 계약자는 부로일러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초생추, 사료, 약품을 사육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이들 부로일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사육자측은 계사와 그 부속시설 그리고 사육관리에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여 부로일러를 생산한 후에는 미리 마련된 계약에 따라서 그 계사및 시설의 임대료를 포함한 부로일러 사육관리비를 해당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약자가 되는 것은 대개가 부화업자 혹은 사료업자, 생산물가공처리업자중 하나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들은 사육자를 통한 부로일러 생산에서 오는 이익 이외에도 부화업자나 사료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생산을 통하여 자기 제품인 초생추나 사료의 안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물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 부로일러 처리시설을 년중 쉬지 않고 가동시킬수 있다는 이익이 결들여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화업, 사료업, 사육자, 그리고 생산물처리과정의 하나의 계통을 이루어 운영함으로써 각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따라서 이익의 극대화(極大化)를 모색하는데 근본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들 부화, 사료, 사육, 그리고 가공처리업이 각기 독립한 채 상호간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과거의 경영방법과 크게 대조되는 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오늘날 부로일러 산업의 경영규모가 확대되지 않을수 없는 실정하에서는 사육자의 입장으로 보면 기만수에 달하는 초생추의 값이나 매일 소비되는 사료값등, 막대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힘들게 되고 부득히 외상거래에 의존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이들 부로일러 생산경영이 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별 문제로 하

고, 만일 뜻하지 않은 손실을 갖고 오는 경우는 과거의 소규모 사육때와는 달리 막중한 피해를 사육자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자연 그 여파는 부화, 사료, 생산물 처리업자들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한편 계약자측으로서는 투자한 채권(債權)을 병아리란 형태로서 항상 확보할수 있는 한편 또 생산된 부로일러의 판매과정에 직접 관여하므로서 투자한 원리금을 쉽게 회수할수 있고 나아가서, 자기기업은 자기기업대로 안전하게 계획생산할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II. 사육비 지불규정의 유형(類型)

대개 미국에서 사육자가 부로일러육성을 완료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할때 부로일러 10,000마리당 약 4~5000\$의 가치가 있게 된다. 따라서 계약생산의 핵심이 되는 문제는 이 수입을 계약자와 사육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계약형태, 특히 사육비 지출규정에 있다고 보겠다.

1945년 직후 얼마동안 양계업계에 자본을 제공하던 그룹은 대개 사료업자들로서 이들은 공개장부제(公開帳簿制)(Open account plan)을 통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사육자는 사료업자에게 사료 병아리 그밖에 소용되는 물품을 구입하게 하되 대금결제(代金決済)는 사육한 부로일러를 판매할때까지 연기하는 일종의 장기 외상제도를 활용했던 것이다. 그후 1952년대에 들어와 사육자에 대한 사육비를 보장하는 점에 중점을 두게되어 본격적인 계약생산을 하게 되었거니와 이때 많이 사용된 계약형태가 남부지방의 **균일보수제(均一報酬制 Flat fee plan)** 및 동부지방의 **이익배당제(利益配當制 Profit Sharing plan)**이다.

균일보수제에서는 계약자는 병아리 사료및 기타 소요물품을 공급하되 사육된 부로일러 마리수 또는 중량에 대하여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불할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익배당제**란 계약자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병아리 사료등을 공급하여 부로일러를 사육시킨후 이 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사육자와 양분하는 제

도인데 만일 부로일러 생산비가 시중판매가격을 초과할때는 그 결손액은 자본주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계약자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하여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을 표시하여 원가를 올리는 등, 폐단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들 제도는 부로일러생산에 따르는 위험부담, 즉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육자로부터 계약자로 전환시키는 점에서 계약생산의 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생산비보장제도는 사육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보수를 주는 관계로 그들의 생산능력을 자극시키지 못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자본을 제공하는 계약자측으로선 문제가 아니될 수 없었다.

년대가 바뀜에 따라 이와같은 기본생산비 보장제도의 폐단을 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이때 대두된 것이 **사료요구율제도(Feed conversion plan)**이다.

사육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그들의 사육능력을 나타내는 사료요구율(전 사료 섭취량을 부로일러 체중으로 나눈 값, 즉 부로일러 1kg 생산하는데 소비한 사료량)에 따라 가감(加減)하게 되는 이 제도는 결국 사육자로 하여금 사료 요구율을 저하시키는 목적을 달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것이 곧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지는 못한다. 즉 사육자들은 무작정 사료효율을 높이는데만 신경을 쓰게 되어 필요이상의 첨가제를 사용한다던가 하여 결국 사료비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실정하에서 다시 사료요구율과 생산된 부로일러체중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불하는 제도, 즉 **사료요구율-체중형(Feed Conversion-body weigh pran)**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 계약은 사료요구율과 더불어 판매된 부로일러의 평균생체중을 기초로 사육자에 대한 사육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즉 동일한 사료요구율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생산된 부로일러체중이 얼마인가에 따라 사육자의 능력은 엄밀히 달라지게 되다. 체중이 큰 닭일수록 소비되는 사료량이 더 많이 드는 때문이

다. 따라서 본 계약은 동일한 사료요구율인 경우 체중이 무거우수록 보너스액을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금 이외에 보너스를 지불하되 보너스는 사육자가 얻은 사료요구율과 그리고 또한 부로일러시세에 기준을 두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부로일러 주요생산비형(Prime Production Cost Plan)이 있다. 이는 기본금외에 보너스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즉 계약자는 자기 회사에 소속된 전 사육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중 사용한 중요생산비(조생추값, 사료값, 약품값)을 조사한 후 전사육자 평균액보다 생산비를 적게 소비한 사육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너스를 주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중요생산비에 따라 모든 사육자를 3-4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그 등급에 따라 보너스를 지불하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게 된다. 이 방법은 사육자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 또 계약자측에서는 사육자의 생산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사육비 지출을 어느 범위내에 한정시킬 수 있다. 즉 어떤 특정한 사육자가 생산비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사육자의 평균 생산비도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육자의 생산비 서열은 앞과 다름없이 되며 따라서 보너스지불내용은 조금도 다름없는 동일한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계약형태인 경우 사육자측이 그들의 능력을 얼마만큼 향상했다하더라도 이것이 곧 보너스액(額)과 직결되지는 못하는 모순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Ⅲ. 각 계약형태에서의 사육자 수익 비교

사육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방법이 자기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며 또 이들 계약형태에 있어서 실제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미국 국무성이 부로일러 생산지역을 상대로 다음 다섯가지 전형적인 계약형태를 골라 비교 조사한 것을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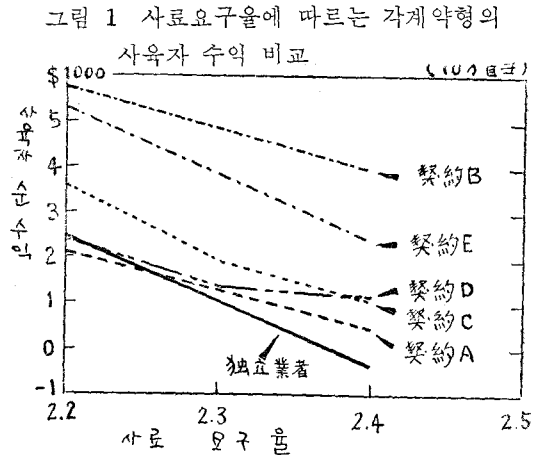


그림1. 사료요구율에 따른 각계약형의 사육자 수익비교. 여기 조사대상이 된 계약형태는 다음과 같다.

- A) 사료 요구율형
- B) 생산비-기본금 보장형
- C) 생산비 등급형
- D) 사료요구율-체중형
- E) 주요 생산비형

(이상 다섯가지 계약형태들이 실제 사육비 지불방법은 끝에 부기한다)

1) 사료요구율에 따른 사육자 수입비교

비교하는 계약형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부로일러시가(市價) (파운드당 15센트)와 사료가격(톤당 85불)을 1964~1966년 평균가격으로 일정하게 설정했다. 그리고 다만 사료요구율만 변화시켰을때 이 변화가 각 계약형태에서의 사육자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료요구율이 향상됨에 따라 사육자의 조수입이나 순수입이 증가하며 반대로 사료요구율이 저하됨에 따라 사육자 수입도 저하하게 된다.

이는 곧 어떤 계약형이거나 사료요구율이 사육자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각 계약형태 아래서 사육자 수입은 기본금 보너스, 감산방법(벌칙)등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으로 사료요구율 자체가 모든 계약형태에 동일한 규모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본 조사의 경우 전 사료요구율을 통해서 가장 수입이 많은것은 생산비-기본금보장형인 B계약을 맺

는 사육자들이다. 그러나 사료요구율이 2.3에서 2.2로 향상되었을때는 B계약은 주로 E계약(주요 생산비형)이나 C계약(사료요구율-체중형)보다 그 유리성이 감소된다. B계약이나 E계약의 경우 사료요구율이 향상됨에 따라 보너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때 E계약형이 B계약형보다 보너스 증가율이 많은 것이다.

또한 C계약의 경우를 보면 사료요구율이 향상됨에 따라 기본금이 증가하며 또 이와같은 증가액은 B계약하에서의 보너스보다 많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사료요구율이 2.3에서 2.4로 저하되는 경우 계약형 모두의 사육자수입은 저하한다. 그러나 특히 E계약에 대하여 B계약의 유리성은 보다 현저하다. 이는 사료요구율이 저하하게 되면 기본금에서 감산(減算)을 하게 되며 이때의 감액(減額)은 E계약의 경우가 B계약보다 많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양능력이 낮은 사육자에게는 일종의 이익배당체이기도한 B계약이 보다 유리함을 뜻하는 것이다. D계약(사료요구율-체중형)의 경우를 보면 요구율 향상에 따르는 보너스가 증가하는데 비하여 사료요구율 저하시 별다른 감액없이 기본금만 지불한다. 따라서 사육자수입의 감소는 대단하지 않게된다. 즉 일반적으로 D계약형태에 비하여 B계약형, E계약이 유리하지만 이는 사료요구율이 나쁠때는 커다란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D계약은 C계약 보다 약간 유리한 수입을 얻게 된다. 한편 사육자 개인은 사료요구율이 2.3이나 2.4의 경우 어떤 계약 경영자에 비해서도 그 수입이 적다. 그러나 사료요구율이 2.2인 경우는 A계약이나 D계약보다는 유리한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보인다.

2) 사료비및 부로일러 판매가격에 따르는 사육자 수익

A계약이나 D계약을 맺는 사육자의 경우 사료가격의 변화자체는 그들 수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C계약을 맺는 사육자는 때로 사료량을 포함한 생산비가 변화할때 그들의 수익에 영향이 온다. 한편 B계약과 E계약을 맺은 사육자의 경우는 사료비가 변질하면 이는

곧 그들의 수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이들 계약은 자기 생산비와 전 사육자 평균생산비와의 관계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기때문이다.

또한 평균보다 상위에 있는 사육자들은 대개 다른 사육자에 비해 사료요구율이나 폐사율이 낮은것이 보통이며 결국 이들도 일정한 부로일러를 생산하는데 소비한 사료량이 적게 된다. 따라서 사료가격이 오를수록 이들 상위 사육자와 평균 사육자간의 수익의 차이도 커지게 된다.

한편 개인사육자는 그들이 소비한 모든 사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사료시장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사료 톤당 75\$에서 95\$로 올랐을때 개인 사육자는 수입이 3,009\$에서 4,997\$의 적자를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 한편 부로일러 판매가격에 따르는 수익 상황을 보면 본 비교조사에 대상이었던 계약형중에는 일종의 이익배당형인 B계약만이 부로일러가격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된다. 물론 본 비교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에서는 부로일러 가격이 대부분의 경우 사육자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적지 않다.

그러나 근래 부로일러의 거의 전부는 계약생산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에서의 부로일러시세가 계약자에 의하여 독점되게 된 후부터는 부로일러 판매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사육비 지불방법을 점차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편 개인 생산자의 경우 부로일러가격 파운드당14센트 이하를 받게 되면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들다고 한다.

반면에 이들은 부로일러 가격이 오를수록 계약생산자에 비하여 직접적인 수익증대를 얻을수 있게 된다. 본 비교조사한것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각 계약방식에 따라 사육자수익이 크게 달라진다. 즉 사육자는 어떤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유리한 계약(여기서 B계약)을 맺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료요구율은 계약형에 관계없이 사육자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더우기 본 조사의 경우 세 사료요구율 수준에 있어서 각 계

약형의 서열도 바뀌지않고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어떤 계약생산을 하던 사료요구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양기술을 보다 낫게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사육자의 수익에 직결하게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비나 부로일러가격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커다란 수익차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는 B계약이며 A계약이나 D계약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한편 개인사육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의 계약생산자들에 비하여 수익이 적고 따라서 위험부담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IV. 계약생산의 문제점

(1) 부로일러 생체중의 결정문제

일반적으로 사육자들은 처리공장에 인도한 부로일러 생체중에 따라 사육비를 받게된다. 이 생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개 미국부로일러생산 지대에서는 도살전 생체중을 조 생체중(Gross Live Weight)이라 부르며 다시 여기서 판매할수 없는 부로일러 즉 불합격계, 운반중 폐계등을 제외한 순전히 판매할수 있는 체중을 정미 생체중(正味生體重: Net Live Weight)이라 하며 거의 모든 회사가 이 정미 생체중을 기초로 사육비 계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실제 정미 생체중의 결정단계에는 부로일러의 감량(減量 Shrinkage), 운반중폐사, 그리고 불합격 등, 복잡한 요인은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定義)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 될 때가 많게 된다.

A) 체중감량(Shrinkage)

부로일러를 계사에서 처리공장으로 운반할 때나 또는 공장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 부로일러는 수분증발로 말미암아 감량을 하게 된다. 대개 더운 여름철 8시간 절식(節食)시키는 경우 약 3%까지 체중이 감소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체중감량은 기본금환산뿐 아니라 사료요구

율계산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너스액까지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이와같은 체중감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극히 소수의 회사만이 계사의 거리에 따라 조 생체중(粗生體重)의 1.5%까지의 감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회사측은 대개 공장근무시간 관계로 예정시간보다 훨씬 전에 닭을 도착시키도록 연락하는 것이 관례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소나마 체중감량이 있게 되는것이 보통이라 하며 또 실제 사육자들도 이점에 대하여 많은 불평을 하고 있다.

(B) 불합격계 체중산출 문제

주로 폐사계, 병계, 타박상이 있는 닭 또는 방역등 원인으로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닭은 검사시 제외하여야 하고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육자의 책임으로 돌려 그만큼 사육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문제는 약 10%에 달한다는 처리공장내에서 생기는 불합격품까지 사육자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이와같은 불합격품은 도살후 검사하게 되는데 이때의 체중은 어떻게 생체중으로 환산하느냐 하는 문제등 그 산출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사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들 불합격계를 환산할 때 평균 생시체중을 대용(代用)하거나 도살 실체중(實體重)에 10% 혹은 20%를 가산, 이를 생체중으로 한다던지 또는 실체중(實體重) 그대로를 공제하는 예도 있어 회사에 따라 불합격품에 따르는 실제 사육비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정미생체중(正味生體重)을 계산할 때에는 운반시 폐사하는 닭의 체중, 부로일러를 평량하는 장소(계사나 처리공장에 따라),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들은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문제라 생각되어 생략한다.

(2) 자본주에 의한 생산비및 이익계산문제

사료요구율형태, 사료요구율-체중형태, 그리고 균일배당형태등 계약에 있어서는 생산비 자체가 사육자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즉 그들은 단지 투입된 자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효율적인 성적을 얻었는가 문제되

지 투자된 원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개장부형에 있어서는 사료및 기타 투자액이 직접 사육자 수입에 영향을 준다. 이들의 수입은 최종적인 부로일러 시가(市價)에서 자본가가 투입한 생산비를 공제한 이익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 생산비 즉 사료, 초생추, 약품비등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부로일러 생산의 한부분, 즉 부화업이나 사료공장 아니면 처리공장등 어느 하나를 경영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사육자에 대한 공급물자는 자기 생산품 혹은 자기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생산품을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동남부의 8대 부로일러 생산주인 「알라바마」 「조지아」 「아칸사스」 지방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라바마」 주의 경우 생산비에 있어서 초생추 사료, 약품등 비용이 생체중 파운드당, 12.08센트, 사육자에 대한 지불액 2.20센트 합계 14.68센트에 비하여 부로일러파운드당 판매가격은 14.09센트가 되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부로일러 파운드당 0.59센트의 손해를 본 수자가 나온다.

이와같은 경향은 「조지아」 「아칸사스」 주도 다름없이 계약자들은 각 각 부로일러 파운드당 0.57센트, 1.93센트의 적자를 본다.

이와같은 회사측에 불리한 적자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한 전문가는 이는 곧 회사측이 적자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움켜잡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공급하는 초생추나 사료대금을 실제 시장가격보다 올려받고 이와같은 방법으로 회사측은 적자는 커녕 실제로는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초생추값을 실제보다 100수당 10\$만을 올리게 되면 이는 곧 부로일러 한마리당 생산비 1센트 또는 한 파운드당 0.30센트를 올리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초생추 100수당 1~2\$ 올려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파운드당 생산비 0.3~0.6센트를 터무니 없이 상승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향은 사료대금 관계에서

도 볼수 있는 것이며 한 사료상을 경영하는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종류의 사료가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100 Lbs당)

	내부사용	외부사용	계약생산자용
육성용사료	3.55 \$	3.97 \$	5.00 \$
완성 "	3.17 \$	3.73 \$	5.00 \$
펠렛 "	3.47	4.01 \$	5.00 \$

따라서 계약회사는 비록 그들의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육자 배당금 계산에 정확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료나 초생추대금 등의 생산비를 조작(Puffing)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또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는 한편 앞에 쓴 서면상의 적자 또는 저렴한 이익실태를 보임으로서 사육자들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이나 또는 강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3) 그 밖에 사육자들의 불평

부로일러계약 생산의 본질은 계약회사와 사육자가 서로의 신용을 토대로 공동 경영해 나가는 데 있는지 모른다. 실제적으로는 계약서란 문서상으로 계약자자와 사육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자는 사육자대로 많은 불평이 오가고 있는것 같다. 이제 단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불평을 열거해 본다.

(A) 계약회사의 강권

대부분의 계약회사는 그 지방 부로일러시장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육자들은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발언이나 또는 계약조건을 갱신등을 꿈꿀수도 없다. 만일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문제사육자」 혹은 「무능한 사육자」로 찍혀 다른 계약회사로 이전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또한 부로일러 시장을 보더라도 그 대부분 상품을 계약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으로 그 가격조절도 경쟁성이 없이 그냥 계약자에 의한

여 지배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부로일러 사육비가 이 판매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계약인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시장을 좌우하고 그만큼, 사육자는 불리한 입장에서 사육비를 계산하게 된다고 한다.

또 어떤 경우는 계약회사가 자기 또는 자기와 관계가 깊은 회사에서 연료나 약품등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것이 보통이며 사육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이 된다는 것이다. 또 어떤 계약회사는 소속된 사육자에게 필요 이상의 시설을 요구하거나 또는 충분한 시설을 다시 갱신하도록 강요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사육자는 계약회사보다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비하여 훨씬 적은 수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불공평한 요구라 하더라도 사육자가 부로일러를 계속 경영할 사정에 있는 한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 또 심한 경우는 사육자들은 그들이 계약한 내용 자체에도 언급할 기회가 없어서 대개 도장을 찍은 다음에나 계약내용을 알게 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엔 사육비를 받을때 그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수가 있어서 사육자들은 자기 사육실적을 알수 없음은 물론 돈이 더 왔는지, 덜 왔는지 모른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B) 계약회사에 의한 공급물자

사육자중에는 계약회사가 공급하는 초생추나 사료가 일반 상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수가 많다고 불평을 한다. 회사는 처음 2,3일 중에 폐사하는 초생추에 대하여는 보충을 해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또한 공급된 사료량에 있어서도 장부에 기입된대로 전량이 인수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은 미국의 경우 사료를 포대에 넣지 않고 수통을 차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애기인데 그렇게되면 사육자들은 자기들의 사료저장고(Bin)이나 운반추력의 용량에 준하여 추측할 수 밖에 없는데 때로는 이 저장능력 이상의 사료값을 청구 받을때가 있다고

한다.

(C) 부로일러 인도(引渡)시기

계약회사는 계약조건에 약속한 일정한 시일내에 부로일러를 인수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부로일러 시세가 불리하거나 처리공장의 사정등이 유를 들어 필요이상 장기간 사육하게 한다고 한다. 그런 경우 사육자들은 사료요구율등 사육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히 수입의 감소를 면치 못하게 되며 회사측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한다. 또한 사육자들은 부로일러를 처리공장에 인도하는 경우 그들을 고의적으로 오래 기다리게 한다던가 하여 결과적으로 평량전에 부로일러의 체중을 감량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V. 부 기(附記)

사육비 지불기준

**(A) 사료요구율형
지불규정**

사 료 요 구 율	사료비 (파운드 당)
2.60 이상	1.00 센트
2.50~2.59	1.25
2.40~2.49	1.50
2.30~2.39	1.75
2.20~2.20	2.00
2.10~2.19	2.25
2.10 이하	2.50

1) 사육비 계산은 부로일러검사를 필한 생체중을 기준으로 한다.

2) 사료요구율은 전 사료섭취량을 검사필한 생체중으로 나눈값으로 표시한다.

B) 생산비—기본금보장형태

지불규정

1) 부로일러 판매 2 주일전을 기준으로 소요 생산비(초생추, 사료, 약품비등)가 전 사육자중 평균 수준일때 부로일러 1000수당, 75\$을 지불한다.

2) 주요 생산비가 전 사육자 평균치보다 부로일러 파운드당 0.01센트 적음에 따라 1000수마

다 20센트를 가산한다. 반대로 평균치보다 0.01센트 많음에 따라 1000수당 20센트를 감산(減算)한다.

3) 생산비 성적에 관계없이 사육비도 입추시 부로일러 1000수에 대하여 50\$을 보장 지급한다.

4) 상기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이익은 계약자와 생산자가 양분한다.

C) 생산비 등급형

지불규정

1) 사육비는 부로일러처리장에 도착한 닭중 농무성검사를 통과한 생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사육비는 사육자의 최저 생산비와 이에 0.75센트를 가산한 것을 등급범위로 설정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불한다.

등	급	부로일러 파운드당 지불액
범위의 최저 1/4	해당자	2.25 센트
범위의 다음 1/4	해당자	2.00 "
범위의 셋째 1/4	"	1.75 "
범위의 최고 1/4	"	1.50 "

3) 투자한 초생추, 사료, 약품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표준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D) 사료요구율-체중형태

지불규정

1) 기본사육비로 전 판매 가능한 부로일러 및 첫 2% 불합격품에 대하여 파운드 당 1.50센트를 지불한다.

2) 보너스 사료요구율과 평균체중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보너스 지불표

사료요구율	평 균 체 중				
	3.15 이하	3.16- 3.30	3.31- 3.45	3.46- 3.60	3.61 이상
	센트/ 파운드	센트/ 파운드	센트/ 파운드	센트/ 파운드	센트/ 파운드
2.00 이하	.80	.90	1.00	1.10	1.20
2.01~2.05	.65	.75	.85	.95	1.05
2.06~2.10	.50	.60	.70	.80	.90
2.11~2.15	.35	.45	.55	.65	.75
2.16~2.20	.20	.30	.40	.50	.60
2.21~2.25	.05	.15	.25	.35	.45
2.26~2.30	0	0	.10	.20	.30
2.31~2.35	0	0	0	.05	.10
2.36 이상	0	0	0	0	0

E) 주요 생산비형

지불규정

1) 사육비는 계약자에 소속된 전 사육자 대상으로 주요생산비를 조사하고 그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생산비중, 사육자 지출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㉑ 주요 생산비가 전 사육자 평균치 보다 적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부로일러 파운드당 2센트를 지불하고 보너스는 그의 생산비와 평균치의 차액 전부를 추가한다.

㉒ 주요 생산비가 전 사육자 평균치보다 많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부로일러 파운드당 2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그의 생산비와 평균치의 차액을 그 기준액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지불한다.

2) 모든 사육비 또는 생산비는 불합격품 부로일러를 제외한 전생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사육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생체중 1파운드 당 최소한 1.5센트를 지급한다.

미국테무라
농장기술제휴

수 색 종 금 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색동291 (Tel 32-4654)

대 표 한 종 석